

적발사례

■ 경기도 A시 B공장 건축물

시공자는 납품업자에게 납품 자재와 상관없이 설계도서와 맞춰 준공서류 위변조요구.

형법 제231조, 제31조 사문서위변조 교사(5년↓, 1천만원↓), 건축법 제110조 제11호, 제52조의3 제1항(2년↓, 1억원↓)

납품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짓 준공서류 제출.

형법 제231조 사문서위변조(5년↓, 1천만원↓), 건축법 제110조 제11호, 제52조의3 제1항(2년↓, 1억원↓)

건축사 ㄱ00 는 현장 상황과 설계도서가 상이함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거짓 건축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제출. 건축법 제110조6의2, 제27조 제2항(2년↓, 1억원↓)

건축사 ㄴ00 는 공사 현장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와 상이함에도 자재검수없이 거짓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. 건축법 제110조 제6호, 제25조 제6항(2년↓, 1억원↓)

건축사 ㄷ00 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건축자재로 시공되었음에도 확인없이 거짓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제출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건축되고 사용 승인된 것임.

건축법 제110조6의2, 제27조 제2항(2년↓, 1억원↓)

■ 경기도 C시 D건축물, E건축물(복지시설, 교육시설)

갑종 방화문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갑종방화문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갑종방화문을 제작 유통함. 건축법 제111조3의3, 제24조의2 제1항(5천만원↓)

시공자는 설계도서와 다른 구성품으로 방화문 제작을 의뢰하며 불연가스켓 대신 일반 고무가스켓으로 불량 갑종방화문을 시공함. 건축법 제110조8의2, 제49조 제2항(2년↓, 1억원↓)

건설사업관리기술자 ㄹ00은 갑종방화문 시험성적서와 구성품이 다른 방화문이 납품되고 시공 되었음에도 자재 검수 없이 방화문 시공을 허락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건축 되고 사용 승인된 것임. 건축법 제110조8의2, 제49조 제2항(2년↓, 1억원↓)

■ 경기도 F시 G공장 건축물

복합자재 제조업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수정해 복합자재를 납품하며, 거짓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함.

형법 제231조 사문서위변조(5년↓, 1천만원↓), 건축법 제110조 제11호, 제52조의3 제1항(2년↓, 1억원↓)

건축사 ㅁ00은 공사현장에 납품된 자재와 복합자재품질관리서 확인없이 불량복합자재 사용을 승인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건축되고 사용 승인된 것임.

건축법 제110조 제6호, 제25조 제6항(2년↓, 1억원↓)